

제2025-52호 2025년 6월 10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규 칙

- 여수시 규칙 제858호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276호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1
- 여수시 고시 제2025-2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5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173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공고 16
- 여수시 공고 제2025-1740호 '2025년도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추천' 접수 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25-1741호 '2025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추천' 접수 공고 28
- 여수시 공고 제2025-1759호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 여수시 공고 제2025-1766호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1
- 여수시 공고 제2025-1772호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51
- 여수시 공고 제2025-1773호 2025년 제2회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무선산공원 조성사업) 53
- 여수시 공고 제2025-1774호 2025년 제2회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돌산공원 조성사업) 54
- 여수시 공고 제2025-1778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56

기 타

- 여수시 훈령 제430호 여수시 케어안심주택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57

회 략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5년 제6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10 일

여 수 시 장 조경기



여수시 규칙 제858호

붙임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8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2) 최근 평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저점수 또는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1)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 등과 비교·확인하여 평가
- 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3)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4) 주요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
 - 가) 총자본비율(6점) 단, 지역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삭제
 - 나)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다) 자기자본이익률(6점)
 -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금 및 예금담보 대출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금리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여수시 관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 “지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시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지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전자납부 실적을 포함한 지방세입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및 근무시간 외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에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7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과 리스크 관리기능 구축 및 제고방안, 금고약정 기간 동안 자금관리 운용능력 및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실적과 운영

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최근 3년간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계획, 금고약정 기간 동안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은 소관부서에서 이미 지정
된 금고 중 수익률 및 자금운용
능력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
한 후 금고지정 관리부서에 금
고약정서의 취급회계에 관한 조
항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 제18조-----

-----.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실시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6. 9.

여 수 시 장

1. 사업 명칭: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 가. 법 인 명: 여수푸른물 주식회사
 - 나. 대 표 자: 김 명 구
 - 다. 등록번호(법인): 120111-1174218
 - 라.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 사업내용
 - 가. 사업목적: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을 통한 생활오수처리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보건 및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나. 사업개요
 - 1) 사업지역: 여수시 묘도동, 삼일동, 소리면, 화양면, 돌산읍, 화정면, 남면, 삼산면 일원
 - 2) 사업규모
 - 면 적= 기정: 4.265km², 변경: 3,689km²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기정: 23개소, 총2,000톤/일**, 변경: 20개소, 총1,750톤/일
- 통합운영센터 1식
- 오수관로= **기정: 95.5Km**, 변경: 89.8Km
- 배수설비= **기정: 4,016개소, 맨홀펌프장 52개소**
 변경: 3,568개소, 맨홀펌프장 75개소

4. 총사업비: **기정: 105,013백만원(공사비 94,677, 설계비·부대비 등 10,336)**
 변경: 104,481백만원(공사비 92,472, 설계비·부대비 등 12,009)
 ※ 총민간사업비는 예상액으로 최종 정산 및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5. 사업시행 기간

- 가. 공사기간: 2022년 6월8일 ~ 2025년 6월 7일
- 나. 운영기간: 20년

6. 사업시행방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 가. 소요토지 확보: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여수시에서 시행
- 나. 소요토지 이용: 공사와 운영에 지장 없도록 사업부지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9. 열람서류 및 도면

-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 나. 열람·문의장소: 여수시 하수도과 (061-659-4999)
- 다. 열람서류
 - 여수푸른물주식회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1) 실시계획 승인조건
 - 2) 실시설계 도서, 공사시방서 등
 - 3) 기타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승인관련 사항.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동(읍)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계	28	필지	58,418	22,433			기정
		계	26	필지	50,004	16,957			변경
1	묘도동		52	전	1,170	1,170	여수시		기정
	묘도동		52	전	1,170	1,170	여수시		변경
2	묘도동		2004-1	답	1,318	582	국(해양수산부)		기정
	묘도동		2004-1	답	1,318	-	국(해양수산부)		변경
	묘도동		733	답	291	291	여수시		변경
	묘도동		733-2	답	329	329	여수시		변경
3	묘도동		1892-104	답	585	585	국(기획재정부)		기정
	묘도동		1892-104	답	585	577	여수시		변경
	묘도동		1892-105	답	212	212	국(기획재정부)		기정
	묘도동		1892-105	답	212	209	여수시		변경
4	신덕동		668	하천	13,770	497	국(국토교통부)		기정
	신덕동		668	하천	12,620	539	국(국토교통부)		변경
	신덕동		477	답	920	920	여수시		기정
	신덕동		477	답	859	859	여수시		변경
5	낙포동		786	답	3,170	897	여수시		기정
	낙포동		786	답	3,170	897	여수시		변경
	낙포동		788-2	답	1,177	386	여수시		기정
	낙포동		788-2	답	1,177	386	여수시		변경
6	소라면	대포리	830-2	전	575	575	여수시		기정
	소라면	대포리	830-2	전	575	575	여수시		변경
	소라면	대포리	830-4	답	111	111	여수시		기정
	소라면	대포리	830-4	답	111	111	여수시		변경
	소라면	대포리	830-1	하천	511	70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7	소라면	사곡리	1073-17	잡	1,415	1,415	국(기획재정부)		기정
	소라면	사곡리	1073-17	잡	1,415	1,415	여수시		변경
8	소라면	복산리	1715-3	도	4,988	551	국(기획재정부)		기정
	소라면	복산리	1715-3	도	4,988	776	국(기획재정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동(읍)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9	소라면	관기리	1295-1	답	927	927	국(기획재정부)		기정
	소라면	관기리	1295-1	답	927	927	여수시		변경
10	화양면	이천리	11	전	830	418	국(기획재정부)		기정
	화양면	이천리	11	전	830	-			변경
	화양면	이천리	1563-1	전	1,071	1,071	여수시		변경
11	화양면	용주리	582-7	잡	924	924	국(기획재정부)		기정
	화양면	용주리	582-7	잡	924	-	여수시		변경
12	화양면	옥적리	1300	대	6,970	168	여수시		기정
	화양면	옥적리	1300	대	6,970	168	여수시		변경
13	화양면	이목리	1393	학	2,057	464	여수시		기정
	화양면	이목리	1393	학	2,057	-	여수시		변경
	화양면	이목리	973-3	학	1,727	120	여수시		기정
	화양면	이목리	973-3	학	1,727	-	여수시		변경
14	화양면	안포리	87-13	임	1,542	1,542	국(기획재정부)		기정
	화양면	안포리	87-13	임	1,542	614	여수시		변경
15	돌산읍	우두리	184	대	2,549	521	전라남도(교육감)		기정
	돌산읍	우두리	184	대	2,549	-	전라남도(교육감)		변경
16	돌산읍	평사리	1192-5	잡	1,008	1,008	국(기획재정부)		기정
	돌산읍	평사리	1192-5	잡	1,008	1,008	여수시		변경
17	돌산읍	죽포리	1872-10	답	1,021	1,021	여수시		기정
	돌산읍	죽포리	1872-10	답	1,021	1,021	여수시		변경
18	돌산읍	금성리	180-1	잡	1,809	1,809	국(기획재정부)		기정
	돌산읍	금성리	180-1	잡	1,809	458	여수시		변경
19	화정면	낭도리	1272-5	잡	2,913	2,913	국(기획재정부)		기정
	화정면	낭도리	1272-5	잡	2,913	747	여수시		변경
20	화정면	개도리	1861	전	1,718	723	여수시		기정
	화정면	개도리	1861	전	1,718	763	여수시		변경
21	남면	심장리	168	전	628	628	여수시		기정
	남면	심장리	168	전	628	628	여수시		변경
22	남면	연도리	248-1	전	698	698	국(기획재정부)		기정
	남면	연도리	248-1	전	698	698	여수시		변경
23	삼산면	덕촌리	산184-12	임	1,686	650	여수시		기정
	삼산면	덕촌리	산184-12	임	1,686	650	여수시		변경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007 (2025. 3. 21.)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1길 25	(주)마리타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582-7번지 지선 공유수면	2,433.1㎡	2025. 6. 9.	해양레저시설 및 마리나선박 계류장 조성

2025. 6. 9.

여 수 시 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여수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자 행정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6. 5.

여 수 시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2.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고기간 : 2025. 6. 5. ~ 2025. 6. 20.(15일간)
5. 공고내용

업 종	업 소 명	영업자	영업 소재지	예고내용
일반 음식점	케이오스튜디오	임*운	여수시 시청동3길 30-4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일반 음식점	조롱박	김**자	여수시 시청동3길 14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일반 음식점	청담	박*덕	여수시 도원로 154-1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일반 음식점	서양료리	주*웅	여수시 소호로 459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유의사항

- 직권 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 061)659-4229

공 고

(「2025년도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추천 접수)

「여수시민의 상 조례」에 의하여 2025년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추천 접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천기간 : '25. 6. 9. ~ 8. 8.(2개월)

2. 추천대상

- 가. 여수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
- 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자

3. 대상부문(7개 부문)

- 가. 지역개발 : 도시, 항만, 관광 등 지역사회개발분야
- 나. 산업경제 :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
- 다. 교육과학 : 인재양성, 인문사회, 자연, 과학분야
- 라. 문예홍보 : 전통문화, 예술, 문학, 언론분야
- 마. 사회복지 : 사회사업, 효행, 선행자, 장한어버이, 근로후생분야
- 바. 체육진흥 : 체육 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 사. 향토방위 : 향토 직장방위와 공안질서분야

4. 대상자 추천

가. 다음 각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1) 여수시장
- 2) 여수시의회의장
- 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 4)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

나. 가항 각호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라도 거주지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5. 추천기준

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지역개발부문

- i)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ii)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개발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2) 산업경제부문

- i)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왕성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 ii)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3) 교육과학부문

- i) 일생을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향토 인재양성에 공이 현저한 자
- ii) 인문, 자연, 사회, 과학 분야에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는 자

4) 문예홍보부문

- i) 예능이 특출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 ii) 언론·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여수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5) 사회복지부문

- i)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인 효행을 숭상·실천하는 효자, 효녀, 효부로서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 ii)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면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 전 시민의 본보기가 된 장한 아버지
- iii) 사회봉사 등에 실적이 뚜렷하여 시민의 귀감이 된 자

6) 체육진흥부문

- i) 여수시 출신으로 국제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였거나 최고상에 준하는 상을 수상한 자
- ii) 희생정신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체육진흥에 공이 현저히 있는 자

7) 향토방위부문

- i)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향토방위태세 확립에 크게 공헌한 자
- ii)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거나 재난발생 시 인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수시민의 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 5)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추천된 자

6. 제출서류

- 가.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증빙자료 각 2부
- 나. 사진(6개월 내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 다. 기타 참고자료
- 라. 주민 추천서(읍·면·동장 추천 시 제출 필요)

7.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061-659-3107)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총무과 행정팀 여수시민의 상 담당자

8. 시 상 : '25. 10월 중(2025년도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9.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행정팀(☎061-659-310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 6.

여 수 시 장

		이 력 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등록기준지				
E-mail			전화번호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 령 청

2025년 월 일

작성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월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공 적 내 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주민 추천서

○ 여수시민의 상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인을 여수시민의 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인(서명)	추천일

공 고

(「2025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추천 접수)

「여수시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운영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을 위한 추천 접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천기간 : '25. 6. 9. ~ 8. 8.(2개월)

2. 추천대상

가. 여수지역 출신 출향 인사로 아래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인정되는 자

- 1) 관 계 : 2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 2) 법조계 : 부장급 이상 전·현직 판검사
- 3) 재 계 : 기업인으로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 4) 학 계 : 부교수급 이상 교수로서 전공분야의 권위자
- 5) 군 인 : 전·현직 장성
- 6) 체육인 :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대회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
- 7) 문화예술인 : 유명작가, 배우, 언론인, 기타 예술인 등
- 8) 기타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자

나. 제외대상 :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시민 누구나 추천 가능

4. 제출서류

- 가.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증빙자료 각 2부
- 나. 사진(6개월 내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 다. 기타 참고자료

5.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061-659-3107)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총무과 행정팀 자랑스런 여수인 담당자

6. 시 상 : '25. 10월 중(2025년도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7.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행정팀(☎061-659-310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 6.

여 수 시 장

【붙임1】 추천서식

추천서

<추천대상자>

추천부문		본 적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상기인은 별첨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여수지역 출신으로서 여수시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있기에 자랑스런 여수인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서류 1. 이력서 2부
2. 공적조서 2부
3. 명함판 사진 2매
4.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2025년 월 일

추천자 소속 직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뒤쪽)

주요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월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공 적 내 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공 고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수시 타 법률고문 운영 수당과의 객관성·형평성 미흡 ⇒ 인상 조정 필요
-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2007. 1. 8.) 이후 미개정에 따른 불가인상 등 현실정 반영 필요
- 시민 자문 등에 따른 고문 노무사 자문수당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명 수정
 - (기존)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개정)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제1조 중 내용 수정
 - (기존) 운영 ⇒ (개정) 운영 등
- 제2조의 조문 제목 수정 및 제3항 신설
 - (기존) 자문범위 ⇒ (개정) 직무

- 제3항 신설 :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제공
- 제4조 기존 규정 정비 :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
- 제5조 조문 제목 및 고문료 수정, 제2항 자문수당 신설
 - 조문제목 : (기존) 고문료 지급 ⇒ (개정) 수당 등
 - 고 문 료 : (기존) 월 200,000원 ⇒ (개정) 월 300,000원
 - ※ 우리시 타 법률고문 운영 수당과의 객관성·형평성에 맞게 인상
(여수시 고문변호사 30만원,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변호사 30만원)
- 제2항 신설 : 자문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 신설
 - 시 정책 등과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 방지
- 제7조(비밀업수의 의무) 신설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 예고기간 : 2025. 6. 9. ~ 6. 29.(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6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의견

라. 제출기관 : 여수시장(산업지원과장)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 1길 23(학동), 산업지원과
- 전 화 : 061)659-3640, 팩스 : 061)659-5817
- 전자메일 : khh7084@korea.kr

붙임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를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운영” 을 “운영 등”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자문범위)” 를 “(직무)”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문노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적 필요나 요청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고문료 지급)” 을 “(수당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0,000원” 을 “300,000원”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민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 ①고문노무사는 시 고문노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고문노무사가 시 정책 또는 입장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없다.

③고문노무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고문노무사는 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

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자문 중 알게 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p> <p>제2조(자문범위)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4조(해촉) ① (생략)</p> <p>제5조(고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u>200,000원</u>의 고문료</p> <p><u><신 설></u></p> <p><u><신 설></u></p>	<p><u>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운영 등--</p> <p>제2조(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고문노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적 필요나 요청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u></p> <p>제4조(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5조(수당 등) ① ----- ----- <u>300,000원</u>-----</p> <p><u>②시민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u></p> <p><u>①고문노무사는 시 고문노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u></p>

<신 설>

다.

② 고문노무사가 시 정책 또는 입장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없다.

③ 고문노무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 고문노무사는 업무 수행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자문 중 알게 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여 수 시 장

1. 개정이유

2015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이순신·원형마리나 계류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현행화 및 세분화, 여수시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혜택 제공의 필요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요트마리나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제24조 여수시민을 위한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

2)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15조 여수시민 계류비 감면 비율 및 구비서류 신설
- 별표 2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 금액 변경
- 별표 3 요트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 중 인양기 사용료 금액 변경

3.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2025. 6. 10. ~ 2025. 6. 30.(20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5년 6월 30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기관: 여수시장(해양정책과)
 - 주 소: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4층 해양정책과
 - 팩 스: 061-659-5830
 - 전자메일: ohmygod1022@korea.kr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061-659-3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일부개정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수시민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시민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 조례 시행 이후 사용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2. (생 략)</p> <p><u><신 설></u></p> <p>3. (생 략)</p>	<p>제24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수시민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 할 때</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퍼센트”를 “100퍼센트,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계류장 시설 상시사용료에 한정하여 20퍼센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시민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 규칙 시행 이후 사용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2의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 및 별표 3의 요트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구분	사 용 료		비고	
		규 격	금 액		
			육상계류		해상계류
계류장 및 적치장	일시사용 (척 / 일)	길이 7m미만	11,000	13,000	
		길이 7~8m미만	13,000	15,000	
		길이 8~9m미만	15,000	17,000	
		길이 9~10m미만	17,000	19,000	
		길이10~11m미만	19,000	21,000	
		길이11~12m미만	21,000	23,000	
		길이12~13m미만	23,000	25,000	
		길이13~14m미만	25,000	27,000	
		길이14m이상	27,000	29,000	
	상시사용 (척 / 월)	길이 7m미만	105,600	140,800	
		길이 7~8m미만	140,800	176,000	
		길이 8~9m미만	176,000	211,200	
		길이 9~10m미만	211,200	246,400	
		길이10~11m미만	246,400	281,600	
		길이11~12m미만	281,600	316,800	
		길이12~13m미만	316,800	352,000	
		길이13~14m미만	352,000	387,200	
		길이14~15m미만	387,200	422,400	
		길이15~16m미만	419,200	454,400	
		∴	32,000원/m 가산		
전 기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수 도	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비 고	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별표 3]

요트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시설물 사용		비 고
	사용구분	사 용 료	
레포트교육장	1회	50,000	
샤 위 장	1회	어 른	1,000
		어 린 이	500
세 척 시 설	1회	10,000	
인 양 기	1회	30,000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를 말한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50퍼센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u>100퍼센트</u>로 하며, 같은 항 <u>제3호</u>의 특별 사유 및 그에 따른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3. 7. 13.></p> <p>1. ~ 4. (생략)</p> <p>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u><신설></u></p> <p>3.·4. (생략)</p>	<p>제15조(사용료 감면) ① ----- ----- ----- ----- <u>100퍼센트</u>, 같은 항 <u>제3호</u>에 따른 감면 비율은 계류장 시설 상시사용료에 한정하여 20퍼센트----- ----- <u>제4호</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u>3.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u></p> <p>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5. 5. 14.자로 재결된 토지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10.

여 수 시 장

1. 사업명 :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봉계동 811-14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5. 5. 14.)
5. 공고기간 : 2025. 6. 10. ~ 2025. 6. 24.(15일간)
6.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여수시 시청동1길 23, 도로과(061-659-4064)
7.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김*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47, ***동 ***호(웅천동, 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2	**중고자동차 판매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 (여수시 좌수영로 962-**)	
3	주식회사 **종합건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가 *_*	
4	한국**보험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	
5	**리스금융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	
6	**연금공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여수지사)	
7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수시 충무동 502-1	
8	**사업공제조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광주지점)	
9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수시 중앙동 ***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무선산공원 조성사업(3차)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5. 5. 14.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10.

여 수 시 장

1. 사업명 : 무선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화장동, 선원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5. 5. 14.)
5. 공고기간 : 2025. 6. 10. ~ 2025. 6. 24.(15일간)
6.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061-659-4634)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박*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번길 *-**(세류동)	

여수시 공고 제2025 - 1774호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돌산공원 조성사업(1차, 2차)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2025. 5. 14.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10.

여 수 시 장

1. 사업명 : 돌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4-89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5. 5. 14.)
5. 공고기간 : 2025. 6. 10. ~ 2025. 6. 24.(15일간)
6.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061-659-4646)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미등기1 (토지대장상 소유자 : 김*열)	여수시 동정	
2	유*영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 10*동24**호 (한강로*가, 한강 대우트럼프월드*차)	
3	피*(주)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길13-*, 2*1호	

여수시 공고 제2025-1778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2003	패류 양식	수하식	15	돌산 금봉	2025.06.18. 2035.06.17.	1,500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	김*기외8	11017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6. 10.

여 수 시 장

여수시 케어안심주택 운영 규정 전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5년 6월 2일

여수시장 권기원



여수시 훈령 제430호

붙임 여수시 케어안심주택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부

여수시 케어안심주택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여수시 케어안심주택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여수시 케어안심주택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 케어안심주택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과 단기적으로 주거·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기간 거주 공간이 필요하여 케어안심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75세 이상인 자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 주민으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65세 이상인 자

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 주민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인 자

2. “수행기관”이란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 일상생활지원, 방문의료 지원, 방문운동지도, 주거안전사고 예방지원서비스 등 입주자가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재지) ① 여수시 문수북1길 38-18(문수동)/ 남

② 여수시 문수북10길 5-9(문수동)/ 여

제2장 케어안심주택 운영

제4조 (케어안심주택 운영) 케어안심주택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여수시는 입주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선(先) 입주 조치 하며, 입주자 및 주택 전반을 관리 운영한다.
2. 퇴원환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수행기관은 퇴원환자 발골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케어안심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퇴원(예정)자를 여수시에 신속하게 연계 의뢰한다.
3. 여수시니어클럽은 케어안심주택(內) 운영 인력을 적극 지원·관리 한다. 케어안심주택 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문수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로만 선정하여 배치하며, 활동인력 (노인일자리)에 필요한 근로계약 체결, 근무상황 확인, 인건비 지급 및 관리·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한다.
4. 문수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케어안심주택 내 활동인력 (노인일자리 참여자)을 여수시니어클럽의 지시를 받아 사업에 참여시키되, 여수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

당한다.

가. 케어안심주택(방, 침구류 관리, 거실, 주방, 실내·외 화장실, 마당, 화단, 창고 등) 청결 유지·관리에 힘쓴다.

나. 청결 유지 외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입주자의 응급상황, 입·퇴거, 서비스 요청 등이 있을 시 여수시에 보고한다.

다. 입주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의 목적 및 절차

제5조 (서비스 제공의 목적)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75세 이상, 섬 지역 65세 이상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해 주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입주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단, 케어안심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퇴원(예정)자는 퇴원환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연계 의뢰한다.

② 서비스 제공 절차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퇴원환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절차를 준용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는 여수시가 결정하며, 선(先) 입주 후 지역케

어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입주자는 가능한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제공받으며, 서비스는 계획 수립, 기록, 종결,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제공된다.

⑤ 케어안심주택 퇴거 후에도 서비스 이용 희망 시, 해당 읍면동에서 지속 관리하고 지역케어회의 조정을 통해 연장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입주 및 입주자 기준

제7조 (입주정원에 관한 기준) ① ‘여수시 문수북1길 38-18(문수동)/남’의 입주정원은 3명으로 한다.

② ‘여수시 문수북10길 5-9(문수동)/여’의 입주정원은 3명으로 한다.

제8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최초 기본 15일 이내로 하며, 입주자 건강 상태 변화 및 환경적 사유로 연장 필요시, 여수시의 결정을 통해 최대 2회(회당 15일 이내) 총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제9조 (입주자 우선순위)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 주민으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65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퇴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75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퇴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 주민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65

세 이상인 자

4. 퇴거자 중 재입주가 필요한 자

제5장 이 용 계 약

제10조(이용계약 및 기본의무) ① 케어안심주택 입주 전, 입주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1호 계약서 양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기간은 최초 기본 15일 이내로 하며, 입주자 건강 상태 변화 및 환경적 사유로 연장 필요시, 여수시의 결정을 통해 최대 2회(회당 15일 이내) 총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체결 시 서비스 내용, 이용 조건, 비용 부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입주자(또는 보호자)는 건강 상태 및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로 같음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수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케어안심주택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2. 감염병(전염성)질환, 중증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감염병 확산, 시설 훼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케어안심주택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6장 서비스 제공 내용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입주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입주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3. 자립생활 : 입주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대상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비밀보장 : 입주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내용) 이용계약 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고, 성격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주서비스 제공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1. 입주생활지원 : 입주 안내, 안전·안부 확인 등
2.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목욕지원 등
3. 방문의료지원 : 기초건강관리, 복약지도, 운동지도, 영양교육 등
4. 방문운동지도 : 개별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 교육 등
5. 주거안전사고 예방지원서비스 : 입주자의 자택 복귀 전 주택 내 주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제14조 (공과금 및 운영비) 케어안심주택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과 공동 생활용품 등 소모품 비용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여수시가 부담한다.

제15조 (본인부담금) 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별표 1 기준에 따른다.

② 개인용품(기저귀, 세면도구 등)은 입주 전 사전 안내하며, 입주자가 직접 준비하도록 한다.

③ 케어안심주택에서 퇴거 후에도 서비스 이용 희망 시, 지역케어회의 조정을 거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퇴거 전 사용하던 서비스의 잔여 횟수는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서비스 종료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기록 및 보존) 입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1. 케어안심주택 입주계약서
2. 입주자 생활수칙 및 입주자 준수사항 서약서

3. 초기상담기록지

4. 케어안심주택 퇴거 신청서 등

제7장 입주자의 응급상황 및 면책 범위

제17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신고 등 선(先) 조치 후 관계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공자의 면책 범위)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제공자의 면책 범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이상징후 또는 응급증상(발작 증상 등) 등으로 입원이나 사망 시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 전까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 전 안전과 관련한 주의 사항들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케어안심주택 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전염성) 질환과 관련하여 기

관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보 칙

제19조 (운영 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운영 규정 개정 시 수행기관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운영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 규정의 비치) 기관은 본 운영 규정을 시설 내에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법령 등의 준용) 관계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 케어안심주택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과 퇴원(소) 후 단기적으로 주거·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u>단기적</u>----- ----- ----- ----- -----.</p>
<p>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란 <u>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75세 이상, 섬지역(연륙교지역 포함) 65세 이상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단기간 거주 공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u></p> <p>② “수행기관”이란 <u>일상생활지원, 방문의료지원, 방문운동지도, 주거안전사고 예방지원서비스 등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u></p> <p>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p>	<p>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입주자</u>”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u>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기간 거주 공간이 필요하여 케어안심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가. <u>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75세 이상인 자</u></p> <p>나. <u>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지역 주민으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65세 이상인 자</u></p> <p>다. <u>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지역 주민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인 자</u></p>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재지) <신 설>

1. 여수시 문수북1길 38-18(문수동)/ 남

2. 여수시 문수북10길 5-9(문수동) / 여

<신 설>

제4조 (케어안심주택 운영) 케어안심주택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여수시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계 의뢰된 대상자 입주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선(先)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2. “수행기관”이란 퇴원환자 재가 복귀지원, 일상생활지원, 방문 의료지원, 방문운동지도, 주거 안전사고 예방지원서비스 등 입주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재지) ① 여수시 문수북1길 38-18(문수동)/ 남

1. 삭제

2. 삭제

<삭 제>

<삭 제>

② 여수시 문수북10길 5-9(문수동)/ 여

제4조 (케어안심주택 운영) 케어안심주택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여수시는 입주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선(先) 입주 조치하며, 입주자 및 주택 전반을

이용자 입주 전 안내 및 이용자 관리, 주택 관리 등 총책(총 책임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은 퇴원환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③ 여수시니어클럽은 케어안심주택(內) 운영 인력을 적극 지원·관리한다.

④ 문수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케어안심주택 내 활동인력(노인일자리 참여자)을 여수시니어클럽의 지시를 받아 사업에 참여시키되, 필요시 여수시의 요청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가. 케어안심주택(방, 이불세척, 거실, 주방, 실내·외 화장실, 마당, 화단, 창고 등) 청결 유지·관리에 힘쓴다.

나. 청결 유지 외 근무시간 중 입주자의 일상생활 도움 요청 시 도움을 주고, 말벗

관리 운영한다.

2. 퇴원환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수행기관은 퇴원환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케어안심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퇴원(예정)자를 여수시에 신속하게 연계 의뢰한다.

3. 여수시니어클럽은 케어안심주택(內) 운영 인력을 적극 지원·관리한다. 케어안심주택 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문수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로만 선정하여 배치하며, 활동인력(노인일자리)에 필요한 근로계약 체결, 근무상황 확인, 인건비 지급 및 관리·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한다.

4. 문수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케어안심주택 내 활동인력(노인일자리 참여자)을 여수시니어클럽의 지시를 받아 사업에 참여시키되, 여수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가. 케어안심주택(방, 침구류 관리, 거실, 주방, 실내·외

등 함께하며 수시로 안전 여부를 살피고, 대상자에게 응급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여수시에 보고하며, 입·퇴소 및 서비스 지원 현황 등 요청이 있을 시에도 즉시 보고한다.

다. 입주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의 목적)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75세 이상, 섬지역 (연륙교지역 포함) 65세 이상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해주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입주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단서 신설>

화장실, 마당, 화단, 창고 등) 청결 유지·관리에 힘쓴다.

나. 청결 유지 외 입주자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입주자의 응급상황, 입·퇴소, 서비스 요청 등이 있을 시 여수시에 보고한다.

다. 입주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의 목적) -----
----- 75세 이상, 섬 지역 65세 이상 -----

제공해 주어 -----

----- 목
적으-----.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

----- . 단, 케어안심주택 입주
를 희망하는 퇴원(예정)자는 퇴

① 케어안심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퇴원(예정)환자 연계 의뢰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한다.

②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서비스 연계 의뢰 절차와 동일한 방법과 서식으로 심화평가 및 통합지원 계획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단, 협약병원 외의 병원 퇴원(예정)환자도 제3장의 기준에 따라 케어안심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자 선정 및 입주 결정은 여수시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에서 결정하며 선(先) 입주 조치 후, 지역케어위원회의에 대상자를 상정한다.

④ 입주 중 이용자의 신청 서비스에 대해 수행기관은 선(先) 제공하며,

⑤ 퇴소 후에도 서비스 이용 희망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돌봄 창구 담당자가 대상자를 관리

원환자 재가복귀지원 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연계 의뢰한다.

<삭 제>

② 서비스 제공 절차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 서비스 절차를 준용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는 여수시가 결정하며, 선(先) 입주 후 지역케어위원회의에 상정한다.

④ 입주자는 가능한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제공받으며, 서비스는 계획 수립, 기록, 종결,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제공된다.

⑤ 케어안심주택 퇴거 ----- 시, 해당 읍면동에서 지속 관리하고 지역케어회의 조정을 통해

하며, 지역케어회의 조정(연장) 대상자로 상정 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입주 및 이용자 기준

제7조 (입주정원에 관한 기준) ① ‘문수북10길 5-9’ (여)의 입주정원은 3명으로 한다.

② ‘문수북1길 38-18’(남)의 입주정원은 3명으로 한다.

제8조 (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최초 기본 15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건강 및 환경상의 사유로 연장 거주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사회복지과 통합 돌봄팀 내부회의를 통해 최대 2회까지 1회당 15일씩 최대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제9조 (입주자 기준) ① 입주대상은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거동 가능한 75세 이상 돌봄 서비스 필요자로,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단기 거주 공간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단, 섬지역은 65세이상 대상자로 한다)
② 동시에 입주 희망자가 다수

연장 -----

--.

제4장 입주 및 입주자 기준

제7조 (입주정원에 관한 기준) ① ‘여수시 문수북1길 38-18(문수동)/남’-----.

② ‘여수시 문수북10길 5-9(문수동)/여’-----.

제8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최초 기본 15일 이내로 하며, 입주자 건강 상태 변화 및 환경적 사유로 연장 필요시, 여수시의 결정을 통해 최대 2회(회당 15일 이내) 총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제9조 (입주자 기준)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 주민으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65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퇴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퇴원

일 경우 아래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 유형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 주민으로서 65세 이상 퇴원(예정)환자 (신청일이 퇴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75세 이상 퇴원(예정)환자 (신청일이 퇴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기(既) 입소자 중 다른 질병으로 재입소가 필요한 자
4	기타 사유(집중 회복 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기거주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 (서비스 제공자 및 입주자 (보호자) 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입주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나. 계약체결 시 제공자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입주

다. 입주자에게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라. 입주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

또는 퇴원 예정인 75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퇴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 주민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인 자

4. 퇴소자 중 재입소가 필요한 자

제10조(이용계약 및 기본의무) ① 케어안심주택 입주 전, 입주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1호 계약서 양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신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주자(보호자)의 의무

가.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여수시(통합돌봄팀)로 즉시 알려야 한다.

나. 케어안심주택 입주 관련하여 시 관계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다. 입주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신 설>

<신 설>

② 계약기간은 최초 기본 15일 이내로 하며, 입주자 건강 상태 변화 및 환경적 사유로 연장 필요시, 여수시의 결정을 통해 최대 2회(회당 15일 이내) 총 45일 까지 연장 가능하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체결 시 서비스 내용, 이용 조건, 비용 부담, 개인정보 수입·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입주자(또는 보호자)는 건강 상태 및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신 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은 최초 15일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2회(회당 15일)까지 연장

④ 서비스 이용계약 시 수집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입주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시 징구하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같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한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로 같음한다.

<삭 제>

제12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여수시의 운영규정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여수시는 입주자가 케어안심주택의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수시에 퇴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수시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②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제11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수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케어안심주택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2. 감염병(전염성)질환, 중증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감염병 확산, 시설 훼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케어안심주택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입주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

이용자의

③ 자립생활 : 이용자의 잔존기
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
능한

④ 비밀보장 : 입주자의 사생활
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
인정보는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내용) 이용
계약 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고, 성격에 따라 서비
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주서비스 제공 내용은 부칙 별
표에 따른다. ① 입주생활지원 :
입주 안내, 안전·안부 확인 등
②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 식
사지원, 동행지원, 목욕지원 등
③ 방문의료지원 : 건강검진, 복
약지도, 운동지도, 영양교육 등
④ 방문운동지도 : 개별 신체기

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
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입주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
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3. 자립생활 : 입주자의 잔존기
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대상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비밀보장 : 입주자의 사생활
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
장해야 한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내용) 이용
계약 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고, 성격에 따라 서비
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주서비스 제공 내용은 별표 1
에 따른다.

1. 입주생활지원 : 입주 안내, 안
전·안부 확인 등

2.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 식
사지원, 동행지원, 목욕지원
등

3. 방문의료지원 : 기초건강관

능 유지 및 향상 교육 등

⑤ 주거안전사고 예방지원서비스 : 입주자의 자택 복귀 전 이용자 주택

제15조 (공과금 및 운영비) ① 케어안심주택 운영 중 발생하는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인터넷 및 TV 요금, 보안업체 사용 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공동생활용품(휴지, 세제)등 소모품 비용은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여수시가 부담한다.

② 개인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용품(기저귀, 세면도구 등)은 입주 전 안내하여 대상자가 준비하도록 한다.

제16조 (본인부담금) ① 케어안심주택 입소 비용은 무료이며, 입소기간 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 횟수만큼 일정부분 정해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리, 복약지도, 운동지도, 영양교육 등

4. 방문운동지도 : 개별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 교육 등

5. 주거안전사고 예방지원서비스 : 입주자의 자택 복귀 전 주택 내 주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제15조 (공과금 및 운영비) 케어안심주택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과 공동 생활용품 등 소모품 비용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여수시가 부담한다.

제16조 (본인부담금) 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별표 1 기준에 따른다.

② 서비스 이용 금액은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시범사업별 본인 부담금 부과 기준과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부과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서비스 이용 금액을 면제한다.

제17조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① 서비스 제공 내역
② 케어안심주택 입주 약정서
③ 입주자 생활수칙 및 입주자 준수사항 서약서
④ 초기상담기록지

제7장 서비스 이용자의 응급상황 및 면책 범위

제18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를

② 개인 용품(기저귀, 세면도구 등)은 입주 전 사전 안내하며, 입주자가 직접 준비하도록 한다.

③ 케어안심주택에서 퇴거 후에도 서비스 이용 희망 시, 지역케어회의 조정을 거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퇴거 전 사용하던 서비스의 잔여 횟수는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서비스 종료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기록 및 보존) 입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1. 케어안심주택 입주계약서
2. 입주자 생활수칙 및 입주자 준수사항 서약서
3. 초기상담기록지
4. 케어안심주택 퇴거 신청서 등

제7장 입주자의 응급상황 및 면책 범위

제18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시 사회복지과로, 시 사회복지과는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19조 (제공자의 면책 범위) 입주 계약 시 이용자 또는 법적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제공자의 면책 범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입주자가 케어안심주택에 기거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상해 등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 증세 등으로 입원 이나 사망 시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 전 까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 전 안전과 관

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신고 등 선(先) 조치 후 관계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제공자의 면책 범위)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제공자의 면책 범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이상징후 또는 응급증상(발작 증상 등) 등으로 입원이나 사망 시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 전까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 전 안전과 관

관련 주의사항들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④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니어클럽, 문수지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의견 수렴 및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법령 등의 준용) 관계 법

관련한 주의사항들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케어안심주택 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전염성) 질환과 관련하여 기관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운영 규정 개정 시 수행기관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한다.

제23조 (법령 등의 준용) -----

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 변경으----- 규정---
----- 발생 할 -----

-----.